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4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이헌승·김선교·박덕흠

박성민 • 서지영 • 유용원

박준태 · 김성원 · 강선영

조경태 • 윤상현 • 박성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건축 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군수 공시행자 지정) ①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 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 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 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 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 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 1.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리 기본법」 제27조・「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에 관한 특<u>별법」 제23조</u>에 한 특별법」 제2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u>제21조</u>----따른 사용제한 ·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 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 는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